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24
----------	-------

발의연월일 : 2026. 9 . 22.

발 의 자 : 김대식 · 김예지 · 윤한홍
조지연 · 박충권 · 이현승
김도읍 · 유상범 · 김선교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정산 절차 등에”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② (생 략) <u><신 설></u>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④ -----</u> ----- ---- <u>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정산 절차 등에</u> ----- ----- -----.